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9
----------	-----------

제출연월일	2015. 3. 31.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1.06.시행)개정되어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진주보훈지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진주보훈지청장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3조제2항)

○ 자 ⇒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2015. 4.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 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진주보훈지청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p>제3조(협의회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협의회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6대대장 3.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6. 거창경찰서장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8. 거창소방서장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p>③ ~ ⑦ (생략)</p>	<p>제3조(협의회회 구성 및 운영) ① --</p> <p>-----</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5. ----- 6. ----- 7. <u>진주보훈지청장</u> 8. ----- 9. ----- 10. ----- 11. -----<u>사람</u>